

<표 4> 정간법상 반론보도청구와 민법상 정정보도청구의 비교³⁷⁾

	반론보도청구권	정정보도청구권
근거법률	· 정간법 제16조 내지 제20조 · 방송법 제41조, 제42조 · 종합유선방송법 제45조	· 민법 제750조 내지 766조
관할	· 언론중재위원회/법원 · 중재대상이 된 정기간행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중재부/법원	· 법원 ·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적
당사자	· 청구인 :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당사자적격의 확대) · 피청구인 : 정간물 등을 발행하는 기업	· 원고 : 불법행위를 당한 자 · 피고 : 기자, 발행인, 편집인 및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
절차	·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	· 법원에 제소
요건	·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여부는 불문	· 고의 또는 과실 · 위법성 · 손해발생(인격권 등 침해) · 인과관계의 요건이 있어야 함
면책사유	청구된 반론보도가 · 정당한 이익이 없을 때 ·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일 때 ·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 국가 등 공개회의에 관한 사실기사일 때	·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형법 제310조)에 해당하는 경우 - 즉 사실의 공공성과 공익성, 진실성이 인정되는 때
심리	· 중재절차에의 출석의무 · 불출석시 : 신청인(1회) - 중재신청철회 피신청인(2회) - 합의간주 · 법원에 심판청구시에는 가처분절차 준용	· 민사소송법상의 변론주의(주장과 입증의 필요)
구제형식	· 중재성립시 : 반론보도문 게재 · 심판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시 : 반론보도문 게재 · 금전배상은 불가	· 손해배상의 지급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정정보도문의 게재 · 반론문 게재도 가능
기한(제척기간)	· 피해자가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사실보도가 있는 후 6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해야 함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소해야 함(민법 제766조)
불복	· 중재 불성립시 법원에 반론보도 심판을 청구	· 판결에 불복시에는 항소 또는 상고
집행	· 간접강제집행(민사소송법 제693조, 제694조) · 법원의 반론보도게재 판결에 대하여는 집행정지가 배제됨	· 간접강제집행 · 집행정지 가능
가처분신청여부	· 반론보도 신청과 별도로 가처분신청 불가	· 제소에 앞서 보도금지가처분 등 신청 가능(민사소송법 제714조)

V. 맺는 말

언론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가능한 최대한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 제21조에서 언론의 자유를 기본권 중의 하나로서

37) 안상운, 앞의 글, p.57.

보장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고도화된 자본주의의 발전은 더 이상 언론이 이러한 사회계몽적 기능에만 머물 수 없게 만들었으며, 언론사와 시민간에 거래되는 하나의 훌륭한 상품으로서 기능하게 강요하고 있다. 그 결과 각 언론사는 시민에게 진실을 보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개인의 법익침해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법적·윤리적 의무의 부담 내지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그런데 종종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 긴장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야기되게 된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언론사의 수입 중 광고수입의 비중이 높아지면 질수록 더욱 짙어질 가능성이 높는데 불행히도 우리 나라 언론산업의 현상이 그러하다는 점이다.³⁸⁾ 그 결과 언론사는 진실보도 못지 않게 자신이 보도하는 기사의 상품적 가치를 높임으로써 언론의 판매부수나 시청률을 높이고 아울러 광고수입도 증대시키는 데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어 진실과 달리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보도내용이 등장하게 될 우려가 점증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언론현실 아래에서 반론보도청구제도가 갖는 시민의 권익보호역할은 매우 지대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록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 결과 진실과 어느 정도 다른 사실이 보도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언론사는 자신의 권리 못지 않게 타인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반론보도를 수용하는 데에 부정적인 태도는 보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현행 정간법 제19조의2 제3항에서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따라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하였을지라도 확정판결을 통하여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게재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반론보도청구가 남용되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또한 반론보도청구권은 어디까지나 기사관계인에게 반박의 기회를 부여하는데에 그 의미가 있는 만큼 중재위원회나 법원에서는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그러한 보도에 대해 신청인(기사관계인)에게 해명 또는 반박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주장, 입장³⁹⁾이 있을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부정함으로써 반론보도청구권이 남용되어 오히려 언론의 자유가 제한당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8) 일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 중앙종합일간지와 지방신문의 광고수입비중은 적게는 72%에서 많게는 85%선까지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신문의 광고수입비중이 40%선에 머물고 있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김학수, 「언론환경변화와 취재보도의 문제점」, 『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 1998년 겨울호, pp.9~10. 참조.

39) 서울지방법원 판결, 1998. 4. 10, 98카기2094.